

서울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2나200961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2나2009611(반소)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가합111572 판결

전문

반소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상빈

반소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낙준

변론 종결 2022. 7. 21.

판결 선고 2022. 9. 1.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가합11157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 148,979,969원과 그중 128,426,287원에 대하여 2021. 10. 7.부터 2022. 2. 1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2021. 10. 7.부터 서울 강동구 D 대 63m²에 대한 반소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226,670원으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다.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반소피고(이하 '피고'라 한다)는 반소원고(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8,149,598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1. 10. 7.부터, 주문 서울 강동구 C 대 83m²를 원고에게 인도한 날 또는 원고1) 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2,600,670원으로 계산한 돈을, 주문 제1의 가) 2)항에 기재된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한 날 또는 원고2) 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226,670원으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제1심판결 4쪽 여섯째 줄과 일곱째 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

『라. 한편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는 2022. 4. 29. 제1토지를 I, J에게 매도하고 2022. 6. 3.

제1토지에 관하여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제1심판결 4쪽 여덟째 줄에 "갑15호증"을 추가

○ 제1심판결 8쪽 여덟째 줄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 "제1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2022. 6. 3.까지, 제2토지에 대하여는 피고의"

○ 제1심판결 8쪽 하단의 각주 6)의 "변론종결일인 2022. 11. 19."

⇒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1. 11. 19."

○ 제1심판결 10쪽 표 첫째 줄부터 11쪽 일곱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나아가 제1토지에 관한 2021. 10. 7.부터 2022. 6. 3.(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은 20,553,682원[= 2,600,670원 × (7+28/31)월]이 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에게 148,979,969원(=

128,426,287원 + 20,553,682원)과 그중 128,426,28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0.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0.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2.

11.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21. 10. 7.부터 제2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1,226,67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는 남편인 E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이미 그 지상에 존재하고

있던 E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의 현황과 이 사건 각 건물이 향후 어떻게 사용되고 운영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원고가 E과 혼인관계가 파탄나자 E의 공동상속인 중 유독 피고만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E과 체결한 이 사건 포기약정이 사정변경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행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나아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9.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관한 피고의 사용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지 않으리라는 신의 혹은 이 사건 포기약정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으리라는 신의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과 E이 재판상 이혼한 2018. 5. 24. 무렵 이 사건 포기약정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관한 2018. 5. 24. 이후의 사용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권리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제1건물은 E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원고는 당시 E과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있으면서 그 건물의 임대, 관리, 수익금 처분 등에 적극 관여하는 등 명의신탁자의 신분을 E과 준공유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자지위에 있는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E의 명의신탁에 따라 마쳐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제1건물의 명의신탁자 지위를 E과 준공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다르지 않으나 제1심 변론종결 후 원고가 제1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제1심판결 중 제1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부분은 종기가 정해져서 그 수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방응환

판사정윤형

판사최현종

- 1) 2021. 10.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에는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 2) 위와 같다.